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09
----------	-------

발의연월일 : 2025. 7. 7.

발 의 자 : 박지혜·이개호·박수현
박지원·서영교·박민규
김남희·허성무·황정아
송재봉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배출·흡수 계수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에너지 연소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정책 목표가 에너지 정책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첫 단추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후 정책의 실행력이 그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영국, 독일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에서는 에너지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전환을 책임지

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성장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감축목표 달성까지 5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수립·운영은 물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관을 현행 환경부에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환경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승계하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를, “환경부장관”

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 ① 정부는 국가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흡수 량, 배출·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분석·검증·작 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u>환경부에</u> 온실가 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종합정 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 ⑥ (생 략)	제36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 계의 구축) ① ----- ----- ----- ----- ----- ----- ----- <u>기후에너지부</u> ----- ----- -----. ② ~ ⑥ (현행과 같음)